

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The Matter of Policy for Estimating the Household Work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鄭榮錦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Young keum, Jeong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정책적 과제 |
| II.사고시의 손해배상문제 | 참고문헌 |
| III.이혼시의 재산분할문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olutions for policy related to estimating the household work to be set up. In this study, the damages to housewife are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victim. And this study criticizes the unfairness in judging wife's contribution to matrimonial property in case of divorce.

So, for the future studies, decisions to the concept of housewife, the survey method for time-use data and the substitute wage are needed. And, for setting up the policy, continuous and objective discussion about the matter, interest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consensus of public opinion, and the reform of image about the family and household work are needed.

I . 문제제기

오늘날의 사회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94년 현재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7.8%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84년 이후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47.1%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25-29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의 1996학년도 교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세 계층과 30-34세 계층은 각각 45.6%와 48.6%로서 20-24세 계층의 64.7%, 35-39세 계층의 59.6%, 40-44세 계층의 61.1%에 비해 참여율이 낮아 M자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1995 여성통계연보 ; 137).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는 역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주부들 중 과반수가 여전히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계층의 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20분 정도(김정희, 이기영 외, 1993, 1994)이고, 가족생활주기별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결과(권혜연, 1996)를 보면, 신혼기에 비해 막내 미취학 아동기에 가사노동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아직도 상당수의 주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들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소득과 승진 등의 가시적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주부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문숙재, 김혜연, 1994),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발생시에 분명히 대비된다. 즉,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급시에 취업주부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전업주부는 무직자로 취급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시에도 맞벌이를 한 주부는 대체로 전 재산의 50%를, 전업주부는 30%를 분할받는 경향이 있다(문숙재, 정영금, 1991, 1993).

가사노동이란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이므로 가족원 전체가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특성상 점차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의 가사노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주부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한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특히 가족내의 보상을 벗어난 사회와의 관계하에서는 더더욱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와의 관계하에서의 보상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업계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결정이나 결혼해소시에 반환받게 되는 재산분할금, 상속 및 증여시에 부인

이 납세해야 하는 세금액, 부인에 대한 사회보장금의 인정 등을 의미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은 학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칠 뿐 여성관련정책으로 입안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기까지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대안들을 제시해봄으로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입안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험배상금 결정 시에 주부의 노동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실제 사고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본다. 또 이혼시의 재산분할 상황에서 주부에게 인정되는 기여도를 판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의,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혜택에서 주부가 제외되는 점도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일부 직종(공무원, 군인)에만 적용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로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잔존문제들을 지적하고 연구과제들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사고시의 손해배상문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나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율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문제가 되는 주부노동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94년 11월 18일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그해 12월 4일에 사망한 주 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각 3세와 4세된 두 딸을 둔 28세의 주부였다. 사고로 인하여 두 자녀는 그들의 고모가 직장일을 그만두고 돌보게 되었으며 남편 홍 모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작업을 도운 한국여성민우회 측에서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조사작업을 시작

〈표 1〉 각 지역별 '파출부' 임금 실태조사(한국여성민우회 조사결과 1)

지 역	가입비(연)	파출부 임금			
		9시~5시	9시~12시	1시~5시	추가(1시간당)
신당동 100-7	40,000원	25,000원	13,000원	15,000원	3,000원
대조동 14-13	40,000원	25,000원	12,000원	15,000원	2,000원
서초동 1485-2	50,000원	30,000원	15,000원	20,000원 (1시~6시)	3,000원
신림동 1641-101	45,000원	25,000원			3,000원
평균	43,750원	26,250원			3,125원

〈표 2〉 각 지역별 '어린이 놀이방' 시간당 비용 실태조사(한국여성민우회 조사결과 2)

지 역	아이돌보기		
	시간당(1명당)	하루 8시간	한달(월~금)
강남구 대치동 등 어린이 놀이방 10군데 평균비용	3,000원	24,000원	350,000원 (9시~6시)

하여 자녀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사망한 주부
의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였다.

비용의 산출방식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1. 기준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의 경우 파출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고, 기준근로시간외의 기타 활동시간(오전 7시~9시, 오후 5시~10시)의 경우 자녀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

→ 파출부에 의한 가사노동 비용 부분 (26,250원) →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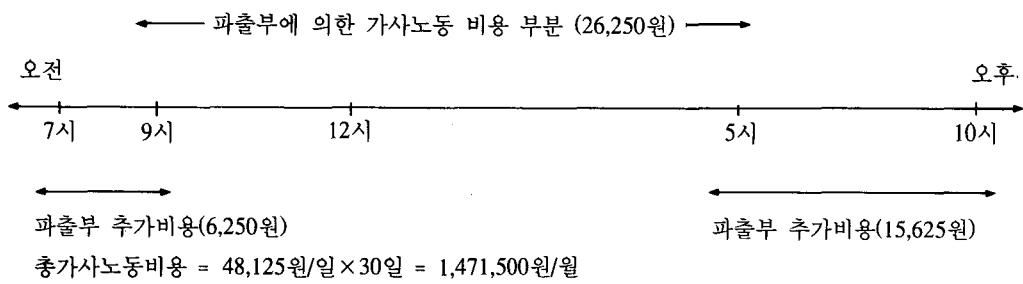


자녀돌보기(6,000원)

자녀돌보기 (15,000원)

$$\text{총가사 노동비용} = 47,250\text{원}/일 \times 30 = 1,471,500\text{원}/월$$

2. 남편의 직장근무에 필요한 시간 전체를 파출부대체비용으로 산출하여, 기준근로시간 외 소요되는 시간은 파출부의 시간연장 추가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



이상과 같이 사망한 주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한 달에 소요되는 자녀보호비용은 약 140만원정도로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주부의 배상액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실수익의 산정시에 보험회사가 가사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임금은 일용근로자 임금인 579,975원으로서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가정학을 비롯한 여성계에서는 사고시 가사종사자를 무직자로 취급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은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주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손해보험업계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 기준 설정에 대한 주장은 물가상승률과 임금 등 제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개별임금에 대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나누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여 전문기관(재정경제원 등)에서 총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주부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득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하나 현

실적으로 그 구체적인 소득산정이 불가능하여 입증불능일 뿐더러 무직자에게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이상으로 주부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여 잠재적인 소득창출의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정주부나 무직자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임.

– 주부의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일용근로자보다도 높다고 볼 수 없고 (평균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음), 가사노동가치가 취업으로 얻는 소득보다도 주관적으로 크다는 것만으로는 주부의 소득을 일용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주부 가사소득 월 557,500원('96년 1월 기준)은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령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현실 및 제반여건상 지나치게 과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판결 태도,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보험료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이를 무시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는 별도로,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제도의 실태는 대부분 실질적인 손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주부 뿐 아니라 일용노동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거의 대부분이 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년을 60세까지 인정하고 있어서 대체로 5~10년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액 증가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므로 실질손해를 배상해 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가사노동문제 뿐 아니라 전체 손해배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김한주, 1995).

이와 같이 일부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보험약관에 의해 배상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하여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인제도를 만들어 소송을 방지하고 있다. 특인제도란 라이프낫쓰 계수대신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인정하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법원 판결의 예상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그것의 8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서, 배상금액을 현실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수의 결정, 정년연한, 생활비율 등이 현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나 법원의 경우나 주부에게 적용하는 현실소득액은 모두 임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인제도도 주부의 노동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장례비나 위자료 등과 같이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부분과는 별도로 피해자 본인의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상실수익액을 주부에게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손보업계에서는 현재의 일용근로자 임금이 현실화되어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용인부의 소득이 높게 책정되기만 하면 주부로서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부에게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무직자 및 학생과는 별도로 가사종사자를 인정해줌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노동가치의 평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주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사종사자 그 자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III. 이혼시의 재산분할문제

최근 이혼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혼율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혼사유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은 전체 혼인신고건수대비 18.1%에 달하여 총 7만 3천여건을 상회하였고, 이혼사유는 여전히 '부정행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일보, 5월 18일).

이혼율이 증가한 것은 91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제도로 인해 여성들의 이혼소송제기비율이 높아진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위자료만 청구한 소송에 비해 그 수가 적어, 제도의 활용이 아직은 부진하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공평하게 분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액수나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아내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기여도와 분할액 산정이 가사노동량이나 화폐가치에 근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 등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강은희, 1995).

그러나 판례에 나타난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액의 인정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의 재산형성에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며 이것은 기타의 합의이혼이나 사회적 인식에 과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한 연구(문숙재, 정영금, 1993)에서는 91년부터 92년초까지 선고된 판례를 통해 기여도 결정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이제까지 맞벌이 주부나 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주부의 경우에는 아내의 수입, 협력정도, 가사노동 공헌도 등을 참작하여 50% 인정되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친정의 도움이나 결혼지참금 등을 참작하여 50% 인정된 예도 있으나 대

〈표 3〉 재산분할처리표

사건번호			93 는 2109	92 드 55453	92 는 6156	92 드 37998
당 사 자	연 령	남	45	55	-	38
		여	37	46	-	36
결혼기간		16	22	11	3	
직 업	남	가방제조공장	자동판매기 수입	택시기사	중장기부품 대리점	
	여	가업도움	보험모집인	숙녀복 도매업, 가사	주부	
자산		2억 1천	연립주택 시가 1억	2억 5천만	7천만	
이혼사유		부인,자녀학대	부인,자녀학대	부정행위	고부갈등, 부당한 대우	
파탄책임		남	남	여	남	
기여도		30%	40%	40%	30%	
재산분할액		7천만	4천만	1억	2천만	
위자료액		-	3천만	-	1천만	
사건번호			92 는 5598	92 는 5789	92 드 51758	92 는 8561
당 사 자	연 령	남	-	-	63	42
		여	-	-	55	42
결혼기간		15	16	33	-	
직 업	남	부동산 건축매매	가로판매점 운영	공인회계사	봉제업체 운영	
	여	공동사업	보험모집인	주부	가사,인삼장사	
자산		2억 5천만	4천 6백만	부동산 시가 45억 5천만	1억 1천만	
이혼사유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혼외자녀,구타	부정행위, 억지	
파탄책임		여	남	남	남,녀	
기여도		48%	43%	10%	27%	
재산분할액		1억 2천만	2천만	4억 6천만의 소유권 이전	3천만	
위자료액		-	5백만	5천만	-	

〈표 3〉 계속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94 드 6728	인천지방법원 92 드 10237	92 는 6582	92 드 59233		
당사자	연령	남	43		—	—		
		여	39	42	—	—		
	결혼기간		9	14	22	16		
	직업	남	의사	부동산 중개업	회사원	용달차 운행		
		여	주부	식당운영과 가사	교사	주부		
	자산		3천 3백 5십만	5억 6천만	9천 1백만	7천 5백만		
이혼사유			남편의 정신질환	남편의 의처증	구타	부정행위		
파탄책임			남	남,녀	남	여		
기여도			29%	21%	44%	26%		
재산분할액			1천만	1억 2천만	4천만	2천만		
위자료액			3천만	—	—	기각		
사건번호			91 드 67633	92 드 69353	92 드 54313	92 드 29331		
당사자	연령	남	59	51	46	49		
		여	59	45	40	55		
	결혼기간		40	20	21	12		
	직업	남	농사,방앗간	택시기사	호텔주방장	운전기사		
		여	가업도움	학원매점 운영, 가사	음식점 찬모	행상		
	자산		20억	1억 5천만	—	1억원		
이혼사유			중첩적 혼인관계	구타	남편외도,구타	남편외도		
파탄책임			남	남	남	남		
기여도			15%	40%	1/3	30%		
재산분할액			3억	6천만	주택의 1/3지분	3천만		
위자료액			2천만	3천만	2천만	1천만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1995),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자료집

체로 30~40%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 경향은 92년 중반 이후부터 선고된 판례들(한국여성 민우회, 1995)을 통해 볼 때, 가사노동에 의한 협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참고)

이혼사유나 판결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표 3>의 재산분할처리표 중 주부의 기여도에 대한 판결만을 따로 비교하면 <표 4> 와 같다.

이 남편의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기여가 일정한도액을 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91 드 6615의 사례(문숙재, 정영금, 1993)에서도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로 인해 막대한 재산이 축적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주부와 남편이 공동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91년부터 92년까지의 판례와 그 이후의 판례를 편

<표 4> 주부의 기여도 판결표

전업주부		맞벌이 주부	
비율(%)	특기사항	비율(%)	특기사항
10	자산 45억 5천	15	자산 20억
26	파탄책임:여	21	파탄책임:남,녀
29		27	파탄책임:남,녀
30		30	총 2건
		33	
		40	총 3건, 1건은 파탄책임:여
		43	
		44	
		48	파탄책임:여 (남편은 부인 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표 4>에 나타난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면, 맞벌이 주부나 가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대체로 30%에서 최대 48%까지 인정하였다. 그러나 파탄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었던 사례(인천지법 92 드 10273, 92 는 8561)에서는 남성에게 파탄책임이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9건 중 7건)에서 보다 기여율이 상당히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산이 20 억원인 경우(91 드 67633)에는 이보다 더 기여도가 감소하여 15%만을 인정하였다. 또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약 30%정도 인정되었으나 파탄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92 드 59233)에는 그나마 26%만 인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이 45억 5천만원인 경우(92 드 51758)에는 결혼기간이 33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기여도만 인정하였다. 이는 가정의 재산축적

의상 전·후기로 보고 그 기간에 인정된 기여율을 비교해 볼 때, 맞벌이 주부의 기여도는 전기의 50%에서 후기에 약 30%~40%로 감소하였고,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전기의 약 30~40%에서 후기에 20~30%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최근들어 여성에게 파탄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 경우에 여성에게 책임을 물어 기여도를 삭감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또 파탄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은 위자료를 통해 배상되어야 할 뿐, 재산분할액 결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액이 많은 경우에 주부의 기여율을 삭감한 사례들로 후기의 기여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재산분할청구권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의 부재도 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IV. 정책적 과제

1. 연구상의 과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여러 연구들 중에서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의 두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연구”(문숙재, 정영금, 1991)로서 여기에서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대체임금률을 기초로 주부 개인별 및 주부 유형별 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였다. 주부 개인별 노동가치는 연령, 교육수준, 학령전자녀의 유무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추정되며, 주부 유형별 가사노동가치는 주부의 노동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수와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 4단계로 유형화하여 산출되었다.

둘째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 모색·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박은희, 1993)라는 연구로서, 여기에서는 평균임금법 A, B, 생활수준평가법, 종합평가법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균임금법 A는 취업 여성전체의 월평균 급여액을 주부의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평균임금법 B는 연령별·학령별·취업 여성의 월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또 생활수준평가법은 남편소득의 50%를 주부의 기여도로 보아 그것을 주부노동의 가치로 삼는 방법이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상실수익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주부노동의 가치로 인정하자는 것이 종합평가법이다. 이렇게 하면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적어도 취업여성의 월평균 급여액과 같거나 높을 것이며 연령 및 학력과 생활수준 등의 차이가 고려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대체고용비설은 가장 간단하나 저임금·취업여성의 소득보다 높게 평가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가내소득에 대한 개여도로써 평가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가정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력

이므로 남편소득·증·일정비율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소득의 보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동일한 가사노동에 대해서 남편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부정된다고 보았던 또 국가에서 발간하는 공인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개별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유므로 보험회사나 변호사, 법원 측에서 남득할 수 있는 역할적 문제와 개관적 원자료의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김한주, 1995). 1995년 6월 1일 : 9801. 둘째는 남편과 함께 살 때리서로 가사종사자의 전체를 포함함으로써 남편은 남부 차가 생기게 되는 임금률의 설정의 나오감상 노동의 양과 질 결정의 번개 관성을 해소하여 각자의 노동과 차별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동참하고는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사고 당사자에게 앤의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므로 더욱 고려한다. 이런 의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놓고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남편과 함께 토지와 부동산, 가사종사자의 개념장립이 적용 가능한 종사자를 모듈 성인 여성으로 할 것인가? 저출산 여성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에 대해 김한주(1995) 또 가사노동의 상품화 책임에 전업주부에게 민족화 있는 경유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경우의 공분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사종사자의 범위를 확장 짜작 할 것에 따라 이를 통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강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량에 따라 그 가사종사자를 구별해야 한다. 모든 가사종사자를 공동 고려 무정재와 통행해제를 취급하거나 취업여성보다 적은 일을 한되고 생각하는 우해를 막을 수 있다. 2. 남편과 함께 토지와 부동산, 가사종사자와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으나 실제로 가사노동의 범위와 영역 구분상의 불일치, 과거 기억을 전통으로 한 가사라는 점, 통계에 행해지는 설로 풍자를 활동을 삶의 구분, 정신적인 활동의 양, 일봉(직원)에 따른 배경의 여성성을 대상으로 주상화되는 점과 같은 여러 차이로 인해 통일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노동영역의 공동생산(joint production)의 차별, 조사방법 등에 대한 학제적 패권적

둘째로, 앞에서 논의한 규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으나 실제로 가사노동의 범위와 영역 구분상의 불일치, 과거 기억을 전통으로 한 가사라는 점, 통계에 행해지는 설로 풍자를 활동을 삶의 구분, 정신적인 활동의 양, 일봉(직원)에 따른 배경의 여성성을 대상으로 주상화되는 점과 같은 여러 차이로 인해 통일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노동영역의 공동생산(joint production)의 차별, 조사방법 등에 대한 학제적 패권적

관간의 합의하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통계조사작업이 필요하며 계속적인 종단적 연구도 요구된다.

셋째로, 대체임금결정의 문제이다. 상실임금의 측면에서 전체 주부의 노동가치를 전체 취업여성 급여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은 매우 간단하나 개별 주부의 손해액에 편차가 많이 생기므로, 이 방법은 주부 노동의 가치를 GNP계산에 포함시키거나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거시적인 연구에서 활용된다. 예가 많다(정영금, 1989 ; 117). 이보다는 오히려, 손해 배상의 문제에서는, 개별주부의 연령과 학력을 반영한 기회비용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또 주부가 원할 때 일정정도의 임금이 보장된 직업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상 저임금의 취업률이 높으며 이 상황에서는 취업이 항상 선호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역의 경우(기회비용이 가사노동가치보다 적어 취업을 하지 않는 주부)와 서로 효과가 상쇄되리라 본다.

한편 상실비용의 측면에서 주부가 수행하던 일만 큼을 타인에게 시키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볼 때는, 남성을 고용한다고 볼 것인지, 여성을 고용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에 의한 노동분화는 남성의 평균임금보다 여성의 평균임금을 낮게 하여 가사노동의 임금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때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므로 남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가사노동을 십여가지로 구분하여 전문가를 고용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부부간의 재산형성기여도의 결정문제이다. 가사노동자들이 무직자가 아닌 독특한 직업군으로 인정되어 그들의 노동가치가 합당하게 결정된다면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에서 취업주부나 취업남편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저절로 가사 노동을 통한 가정생산과 취업노동을 통한 소득획득에 의해 가정생활이 영위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재산형성에 있어 대가의 부담만을 협력으로 보던 종래의 판례태도에서 탈피하

여 가사와 자녀의 양육이라는 간접적·무형적 기여를 모두 협력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렇게 이루어한 협력재산은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이라고 본다(한국여성민우회, 1995). 따라서 남편의 축재능력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부부에게 양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분할재산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로 이제는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합산과세대상을 부부로 하는 부부합산과세추세를 떠며, 상속법 개정안에서도 비과세한도를 30억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금액한도를 없애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조선일보, 1996, 6, 4). 이제 우리의 부부재산제도는 순수한 별산제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유제적 성격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국여성민우회, 1995).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분할된 재산은 주부의 근로소득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상의 과제

1)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인정도 집단결속력이 부족한 주부들의 문제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과 조정·협의하여 해결함으로써 공익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내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논의는 여성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중여세의 문제, 분할재산에 대한 과세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은 일시적인 요구수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까지 예측한 장기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2)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신설되어 모든 여론이 집중되었던 1991년 당시 판례에서 보여준 아내에 대한 기여도 판결은 1992년 후반으로 가면서 그 기여도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본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이혼시의 상황이 모두 다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여도 결정이 판사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이든 법률이든 간에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실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 활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방법 역시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한국여성민우회, 1995). 특히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개선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배상기준액을 높이기란 불가능하므로 판례에서 인정한 주부노동가치가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또 이혼시 재산분할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판례의 축적은 앞으로의 재판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가치를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통계를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조계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가사노동 평가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법원과 변호사, 보험회사, 사고를 당한 가정사이에서 보상금을 결정해주는 가사노동감정사(조희금, 1993)가 없는 상황에서는 학문적인 결과와 법조계를 수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가사노동감정사의 활동이 요구된다.

4)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은 주부의 사회적 지위 확립을 통해 가사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인 제도마련과 아울러 가사노동에 대한 주부들 자신의 사고가 정립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정체감 및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교육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정의 역할과 그 안에서의 가사노동의 기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은희(1995), *이혼, 그 새로운 만남*, 서울 ; 까치.
- 2)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pp. 37-52.
- 4) 김한주(1995),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 정당한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 5) 문숙재, 김혜연(1994),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주부직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4호, pp. 15-30.
- 6) ———,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 29권 4호, pp. 131-150.
- 7) ———, 정영금(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1호, pp. 13-24.
- 8) 박은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 모색”, *정무장관 (제2)실 정책자료* 94-1.
- 9) 오옥화(1994),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0)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1호, pp. 31-46.
- 11) 조희금(1993), 가정관리·소비자학 전공자의 취업 전망과 과제, 제 46차 추계 학술대회.
- 12)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정영금(1995), 대체비용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 정당한 가사노동가치인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 14)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 여성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15) 한국여성민우회(1995),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자료집.

- 16) Goldschmidt-Clermont, Luisella, *Unpaid work in the household*, Women, Work and Development 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5.
- 17) Hannele Hallman, *Household work and its significance to the individual*, Helsinki, 1990.